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을 폐지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능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면서 전력자원관리실의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장 밑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방연구개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를 각각 신설하며, 체계적인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방개혁실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중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4급 1명, 5급 2명)은 한시

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5. ~ 7.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인사복지실·자원관리실 및 전력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을 “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국방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방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혁신 정책의 총괄·조정
2.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변경
3. 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4. 국방혁신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5. 국방혁신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7. 국방혁신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4조의 제목 “(전력자원관리실)”을 “(자원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을 “자원관리실”로, “3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12.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13.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제15조제2항 중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을 “국방부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을 “자원관리실”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을 “전력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첨단전력기획관)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첨단전력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력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3.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4.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첨단 전력기획관으로 국방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총괄과를 둔다.

-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 군·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④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유무인복합체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둔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혁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2.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성과점검·관리
3.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성과 관리
4. 계열화·모듈화 기반 무인체계 구축, 제도 발전
5. 첨단기술 분야 민·군 협력사업 기획·조정
6. 미래 첨단 핵심전력 선정 및 확보방안 수립

④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

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조정
2.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3.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통제
6.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④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76”을 “678”로 하고, 일반직 계 “668”을 “6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6”을 “648”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 3]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29조의3제4항,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제4항 및 제29조의7제4항 관련)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월 30일)

총계	15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14

2.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

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5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3급 또는 4급 이하	7

4. 국방연구개발총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4급 이하	1

5.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6.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u>운영지원과 · 국방정책실 · 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인사복지실 · 자원관리실 및 전력정책국</u> ---.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u>법무관리관 및 감사관</u> 각 1명을 둔다.	② ----- ----- ----- ----- <u>법무관리관, 감사관 및 국방혁신기획관</u> ----- -----.
<신 설>	제9조의2(국방혁신기획관) ① <u>국방혁신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u> ② <u>국방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1. <u>국방혁신 정책의 총괄 · 조정</u> 2. <u>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 · 변경</u> 3. <u>국방혁신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 시행</u> 4. <u>국방혁신 각 시행기관 · 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u> 5. <u>국방혁신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 · 평가</u>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
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
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
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31의3. (생 략)

32. 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의 수
립·조정 및 통제

33.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
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4.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
득·운영 업무의 조정

35.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
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지침의 수립·조정

35의2.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7. 국방혁신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4조(자원관리실) ① 자원관리
실-----

----- 2명-----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

--.

1. ~ 31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u>	
<u>35의3.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 책의 수립</u>	<u><삭 제></u>
<u>35의4.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 립 및 결과 판정</u>	<u><삭 제></u>
<u>35의5.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u>	<u><삭 제></u>
<u>3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 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 도발전</u>	<u><삭 제></u>
<u>37.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u>	<u><삭 제></u>
<u>3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 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 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삭 제></u>
<u>39.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 선사업의 검토·조정</u>	<u><삭 제></u>
<u>40. ~ 43. (생 략)</u> <u><신 설></u>	<u>40. ~ 43. (현행과 같음)</u> <u>제14조의2(전력정책국) ① 전력정 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u>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u>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
· 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
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지침의 수립·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
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
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
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u>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u> 10. <u>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11. <u>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u> 12. <u>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u> 13. <u>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u>
제15조(군무회의) ① (생략)	제15조(군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u>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u>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생략)	② ----- ----- -- ----- ----- -----<u>국방부자원관리실장</u> -----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8조(국방개혁실)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
23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10퍼센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0퍼센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국방개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2.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변경
3. 군 구조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4. 군 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5. 군 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7. 국방운영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8. 국방운영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9. 국방운영 개혁 분야 각 시행
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
획 종합

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
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
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⑧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
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
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
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
한다.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
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
--- 자원관리실-----

따라 2024년 1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
사업단을 둔다.

② ~ ⑥ (생략)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
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
업수출기획과를 둔다.

② (생략)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 8.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 전력정책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
기술의 -----

5.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첨단전력기획관) ① 국

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

<신 설>

는 한시조직으로 첨단전력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첨단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첨단전력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력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3.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4.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첨단전력기획관으로 국방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5(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
총괄과를 둔다.

②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
한다.

③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2.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
버넌스 강화

3. 군·산·학·연 융합형 연구개
발 체계 구축

4.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 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에 관한 업무

④ 국방연구개발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6(유무인복합체계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
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유무인복합체
계과를 둔다.

② 유무인복합체계과에 과장 1
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 장교
로 보한다.

③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혁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 총괄·조정
2.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
합전투체계 성과점검·관리
3. 국방 드론·로봇 분야 발전
전략 수립, 성과 관리
4. 계열화·모듈화 기반 무인체
계 구축, 제도 발전
5. 첨단기술 분야 민·군 협력
사업 기획·조정
6. 미래 첨단 핵심전력 선정 및
확보방안 수립

④ 유무인복합체계과에 두는 공

<신 설>

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중동아프리카정책과)

①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둔다.

② 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 외교정책 수립·조정

2.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사외교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3.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u>아 국가와의 주요 군사정세</u> <u>분석과 대책 수립</u> 5. <u>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u> <u>활동의 조정·통제</u> 6. <u>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u> <u>항 지원 및 협조</u> 7. <u>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다자안보 협의,</u> <u>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u> <u>무의 조정</u> ④ <u>중동아프리카정책과에 두는</u> <u>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u> <u>다.</u> ⑤ <u>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u> <u>방부령으로 정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6</u>	<u>678</u>	+2
·	·	·	
·	·	·	
일반직 계	<u>668</u>	<u>670</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6</u>	<u>648</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